

技術檢討의 是是非非

技術士 金 慶 植
(機 械 部 門)

目 次

1. 外資導入法施行令 第 9 條
2. 技術導入契約書
3. 技術導入契約 技術檢討 是是非非
 - 1) 一般的 姿勢
 - 2) 特許導入과 商標使用
 - 3) 簡單한 印象
 - 4) 困難한 問題
4. 技術檢討機關

1. 外資導入法施行令 第 9 條

韓國技術士會는 1967年 12月 「外資導入法施行令에 關한 建議書」를 當局에 提出한바 있다. 그의 內容은 外資導入法施行令(1966. 9. 24. 大統領令 第 2756號) 第 9條(技術用役者の 檢討)에 있어서

1) 技術導入契約에 依한 認可申請書도 事前에 技術士의 技術檢討를 받아야 한다.

2) (但書에 依한 現金借款契約 또는 資本財導入契約으로 因한 技術檢討에 있어서)……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할수 없을 때에는 技術士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科學技術處長官의 意見을 들어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어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의 2個 建議事項이다.

그 中 主로 言及하고 싶은 것은 第 1項인데 그 內容은 同施行令 第 9條는 現金借款契約 또는 資本財導入契約의 認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技術士法(1963. 11. 11 法律 第 1442號), 第 25條(技術士의 活用) 第 1項의 規定에 依하여 同施行令 第 3條(認可의 要件)의 事項에 關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이 指定하는 技術士(技術士를 雇傭

하는 技術用役者를 포함한다)의 技術檢討를 미리 받게 되어 있는데 外資導入法 第 2條(定義)에서 「外資」를 定義하고 있는바와 같이 外資中에서 重要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導入된 技術」에 關한 技術導入契約에 對하여 技術檢討를 前記 同施行令 第 9條인 技術用役者의 檢討 對象에서 除外함은 妥當하지 못하니 建議事項 1과 같이 이를 插入 修正補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至極히 當然한 것이며 當局에 依하여 善處되리라 믿는 바이다.

此際에 本件 技術導入의 契約에 關하여 重點을 두고 現在까지의 日淺한 經驗에서 본 若干의 問題點을 들어 論述하여 보기로 한다. 于先 技術導入契約書의 規定條項例를 參考삼아 提示한다.

2. 技術導入契約書

技術導入契約書의 規定條項은 各社各樣이나 一般的으로 技術提携契約(Technical Collaboration Agreement) 技術援助 및 特許實施許與契約(Technical Assistance and Patent License Agreement, 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또는 協定書等의 形式으로 技術提供者(Technical Adviser)와 技術導入者(實施者 Licensee)間에 契約되는데 그의 條項例는 別表 1·2·3과 같은 것이 있다.

即 契約되는 大體의 內容은 契約對象, 期間, 地域, 支拂代價 等의 定義 및 方法과 其他 制限 또는 關聯條項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別表 1. 技術提携契約書 (例 1)

(Technical Assistance & Patent License Agreement)

緒文(Recitals)

- § 1. 定義(Defintion)
 - 1-1 契約製品(Contract Products)
 - 1-2 事業部(Department)
 - 1-3 特許(Patents)
 - 1-4 技術情報(Technical Information)
 - 1-5 技術情報の範圍(Withou Limitation Technical Information)
- § 2. 技術情報 및 서어비스
(Technical Information and Service)
- § 3. 技術諮問(Technical Consultation)
- § 4. 特許(Patents)
- § 5. 補償關係(Compensation)
- § 6. 關係國政府法規(Government Regnlations)
- § 7. 一般制限(General Limitation)
- § 8. 導入者에 對한 部品輸出(Component Sales to Licensee)
- § 10. 商標(Trademarks)
- § 11. 通告(Notices)
- § 12. 契約의 讓渡(Assignment of Agreement)
- § 13. 適用法規(Applicable Law)
- § 14. 契約總括 및 修正(Entire Agreement and Amendments)

別表 2 技術援助 契約書 (例 2)

(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前文(Preamble)

- § 1. 契約期間(Term of Agreement)
- § 2. 特許實施(Licenses)
- § 3. 技術 및 製品에 關한 情報
(Technical and Manufacturing Information)
- § 4. 商號(Name)
- § 5. 支拂(Payments)
- § 6. 技術提供者의 特許實施(Licenses to Technical Advisor)
- § 7. 特許(Patents)
- § 8. 第三者(Third Parties)
- § 9. 部分品販賣(Sale of Parts)
- § 10. 技術提供者의 特許實施 物品의 販賣
(Sale of Licensed Material to Technical Aavison)
- § 11. 財産(Property)
- § 12. 政府規定(Government Regulation)

- § 13. 解約(Termination)
- § 14. 仲裁(Arbitration)
- § 15. 諸稅 및 公課金(Charges)
- § 16. 適用法規(Applicable Law)
- § 17. 讓渡(Assignment)
- § 18. 雜則(Miscellaneous)

別表 3. 技術援助協定 (例 3)

前文

- § 1. 라이선스 賦與
- § 2. 라이선스 範圍
- § 3. 技術援助
- § 4. 部品の 供給
- § 5. 生産設備의 供給
- § 6. 品質維持
- § 7. 機密保持
- § 8. 商標
- § 9. 販賣地域
- § 10. 報酬
- § 11. 最低數量
- § 12. 特許
- § 13. 第三者와의 契約
- § 14. 違反
- § 15. 仲裁
- § 16. 協定の 非讓渡性
- § 17. 期間
- § 18. 發効
- § 19. 其他

3. 技術導入契約 技術檢討 是是非非

外資導入法第2條(定義)를 보면 「技術導入契約」이라 함은 大韓民國國民이 外國人으로부터 工業所有權 기타 技術의 讓渡, 그 사용에 관한 權利 또는 經濟企劃院長官이 인정하는 技術을 導入하는 契約으로서 그 條件이 代價의 支拂을 對外支拂手段에 의하고 支拂期間이 1年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고 規定지어 있는데 略述하면 外國人으로부터 工業所有權(即 特許 實用新案 意匠 및 商標에 關한 權利)이나 技術的 know-how 를 導入하는 契約으로서 그의 代價支拂期間이 1年以上인 것

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同施行令 第3條(認可의 要件)을 보면 外資導入法 第17條(現金借款契約, 資本財導入契約 및 技術導入契約의 認可) 第1項에 의한 技術導入契約에 대한 認可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適合한가를 審査하여야 한다.

1. 導入의 必要性
2. 技術의 內容 및 方法
3. 技術導入의 代價
4. 契約期間
5. 經濟的 技術의 波及效果
6. 他同種業體와의 關聯性

이렇게 規定되어 있다.

即 契約內容檢討事項은 그 技術導入의 必要性 內容 그의 代價 契約期間 및 그로 因한 效果 등을 審査키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이 實質的으로 施行된 것이 얼마되지 않는다. 그 적은 經驗으로 이를 是是非非하는 것은 性急한 點은 있으나 若干이나마 參考될 點이 있으면 하여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契約上의 問題點을 短片的으로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1) 一般의 姿勢

技術先進國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은 後進國으로서는 必要不可欠한 것이고 如何히 하여 이를 迅速히 吸收 消化하는가 하는 것은 國家發展에 重要한 要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導入은 當然한 權利이며 조금도 體面損傷이나 卑屈한 것으로는 看做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먼저」란 競爭心으로 無秩序일 때는 이로 因하여 얻어지는 實利보다 많은 損失이 클 때가 있을 것이니 國家的 調整은 甞치 못할 것으로 본다.

一般的으로 볼 때 東洋의 美德이라고나 할까, 技術提供對象者에 對하여 지나치게 低姿勢인 것 같은 印象을 흔히 받게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give and take 로 正當한 그의 代價를 支拂하고 있는 것이고 技術提供者도 그 외에 自己의 市場 擴大 또는 據點마련 PR 등 그의 얻는 것이 또 있는 것이니 東洋의 스승의 觀念은 必要치 않은 것으로 보며 對等한 立場에서 互惠友好的으로 契

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對等去來에 影響을 주는 要因은 實施者의 國內에서의 位置(例를 들면 國內外特許權所有件數의 多寡) 企業의 歷史 市場占據率 國內技術에서 차지 하는 比重 等等인 것 같으며 그에 따라서 若干의 程度差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特許導入과 商標使用

前述한 바와 같이 技術導入契約은 工業所有權과 know-how 導入을 骨子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惹起되는 問題點의 하나는 特許와 商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特許와 商標에 關하여는 互惠的이고 서로 保護한다는 根本精神은 萬國 共通의 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各國의 法으로 規定되어 있는 內容이 若干의 差가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그나라 그 나라의 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韓國內에서의 特許權의 效力은 韓國特許法에 依하여 登錄된 것에 限하여 保護를 받을 수 있다. 韓國에서 特許되지 않고 外國에서 特許된 것은 韓國內에서는 特許權의 保護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萬若 外國人인 技術提供者가 韓國內에서 登錄된 特許가 없을 때에는 그는 韓國內에서 누구에게도 特許에 對하여 專用實施(Exclusive License) 또는 通常實施(Non-exclusive License)를 줄 수 없으며 그리고 實施料(License fee)를 徵收할 수 없음은 勿論이거니와 그가 韓國外에서 登錄한 特許라 할지라도 韓國內에서의 第3者의 實施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萬若 韓國內의 같은 對象에 對하여 特許된 特許權이 있을 때에는 前記 技術提供者가 韓國外에서 特許받은 事實은 問題가 되지 않으며 韓國內에서의 實施는 不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이 實施權問題에 對하여 國內法으로서 特許 參考할 것은 通常實施權者는 再實施(Sub-license)를 許與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韓國商標法으로서 商標實施許與가 認定되어 있지 않으므로 導入者는 技術提供者의 商標에 關하여 實施登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技術 提供者의 商標가 韓國에 登錄되어 있을 때 技術提供者가 導入者에 對하여 提供者의 商標를 使用함을 默認하거나 使用하게 하였을 때

에는 商標法 第 23 條(商標登錄의 取消)에 依據 審判에 依하여 技術提供者自體의 商標의 登錄이 取消될 憂慮性도 있는 것이다.

即 國內法을 等閑視하면 相當한 努力과 費用을 들여서 假契約한 것이 政府의 承認을 못받게 되고 (過去에는 그릇되게 認可된 일도 있지만)修正契約같은것을 다시 하게 되니 不必要한 時間과 費用이 過重하게 되는 수가 있는 것이다.

간혹 契約書中 「Licensed by ○○」란 用語를 「○○特許技術提携製作」으로 어렵게 翻譯하고 있는 수가 있는데 이는 危險千萬이다. 「特許」란 用語를 使用할때에는 韓國特許權을 明示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의 明示없이 ○○會社가 韓國內에서 技術提携한다는 것은 矛盾이 되고 紛爭거리가 될 憂慮가 있는 것이다.

또한 國內에 特許權登錄이 없는데도 不拘하고 Royalty 를 特許權使用料云云으로 翻譯하고 있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正確한 解釋이라 볼수는 없다.

가끔 世界特許權이란 用語를 使用하고 있는것을 보는데 이는 不當한 것으로 본다. 前述한바와 같이 그 나라에서 特許된 것만이 그 나라에 限해서 獨占排他的인 權利가 있는 것이지 이는 他國에까지 미치지 않는 못한다. 즉 世界共通特許權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單只 여러나라에 同一한 對象으로 特許登錄한 것은 각 그나라들에 있어서 權利가 있는 것이니 같은 權利를 여러나라에 亘하여 가지고 있다고 할 程度로 善意的으로 解釋안되는 바는 아니다.

近者 工業所有權에 對한 關心이 漸騰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이는 企業人 研究人 學者 技術者 가림없이 보면서도 못보는 盲點일지도 모른다.

3) 簡單한 印象

어떤 契約書는 그의 規定條項 內容이 많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적은 것도 있다. 많은 것은 그의 內容이 具體的으로 嚴格히 規定되어 있고 어마어마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感이 들고 條項內容이 적은 것은 若干 어리숙한것 같으면서 相當히 友好的인 感은 받게 되는 수가

있다.

技術援助를 받는 側이 弱者인지 또는 어떤 時期後에는 強者가 될지는 簡單히 結論지을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恒常 自己에게 有利하게 恣意性있게 解釋되게 하는 것이, 그리고 若干 餘裕가 있는것이 어떨런지 하고 印象받으면서도 導入될 技術內容의 明示 그리고 그의 定義의 正確 이것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感을 종종 받는다.

가끔 技術을 提供함에 있어서 받는 側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云云이란 序頭가 있는 것을 보는데 받는 側으로서의 有利하지 못한 方式인 것 같다.

契約期間에 있어서는 于先 短期로 하고 繼續延長시킬 수 있는 可能性이 있게함이 有利하지 않을까, 特히 그 技術이 限定되고 特定的인 것, (例를 들면 特定 Model에 限한 것)은 長期契約하면 어긋한 代價를 長期支拂게 될 憂慮가 있지 않을까 技術은 發展되고 進歩되는 것이기에 미리 長期間 못을 박는 것은? 等等의 印象을 받는데 이는 燥急히 서둘러서 契約하는 까닭에 그리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4) 困難한 問題

技術提携下에서 製造되는 製品의 性能 保障이란 問題가 종종 論議되는데 이는 前述한 施行令 第 3 條의 認可要件에는 記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製品의 性能이 重大한 結果를 주는 品種(例를 들면 保安裝置같은 것)에 있어서는 特히 그것은 國內에서 처음인 境遇에는 考慮되어야 할 點으로 본다. 勿論 그의 國內 Maker가 國內에서 同種部門에 相當한 實績이 있고 技術面에도 優秀하다고 認定될때는 좋지만 實績이 없을 때는 그 製品의 使用者를 保護하고 信賴感을 줄수 있는 方法이 있어야 할것이다.

一方 이것을 技術提供者의 立場에서 볼 때, 그의 援助下에서 製造되는 製品의 性能을 保障하려면 그 實施者의 技術程度에 滿足할 수 없을 때에는 製品의 各 製造過程에서 各 作業에 使用되는 各 施設 및 部品 等の 檢査權 없이는 그를 保障하기는 困難한 것이고 그렇다고 그의 檢査權이 不合格時의 問題點이 發生되고, 또한 國產

化率을沮害할뿐만 아니라國內實施者의主導權이剝奪되는境遇가 되어結局保稅加工의域을뺄치못하게되는데이問題는一般的으로概括的으로는結論짓기는無理하다.性能保障과檢査權이것은그의程度와限界를Case by Case로分析檢討하여야할困難한問題點의하나가될것이다.

製品輸出問題 이것도困難한問題의하나가될것이다.大體的으로工業所有權에對한契約은그의權利가設定登錄되어있거나將次할것을前提로하거나를不問하고그의實施權設定에對한契約形態가되는것이普通인데 거기에서考慮할點은前述한바와같이專用實施,通常實施로區分되어있으니그것을確實히하여야한다는點이다.그리고그의契約된內容은前述한各種契約書內容과大差없으며普通特許發明의實施에對하여期間,場所및內容에制限을加하여契約되게되는데특히外國人과일때는實施할地域에制限을받게되는것이다.

다시말해서地域을韓國內로限하게되면國外輸出은制限받게되는것이다.그의製品이外國어떤나라에輸出될때(外國製品이韓國內에輸入될때에도같지만)그나라의特許權에牴觸또는侵害가될때에는入國이不許되며잘妥協이되더라도그나라의特許權에對하여特許料의支拂을뺄치못하게되는것이다.勿論이는技術提供者가그나라에그에對한特許權을가지고있을때에도또한같은것이다.그러나製品輸出에關해서는技術提供者는別途의契約을맺고자하는것이고一般的으로地域은처음定義條項에서韓國內로規定짓는수가大部分인것같다.技術提供者나그의導入者가對等相互의일때에는兩者의【特許權이미치는範圍內에서서로交換하는所謂Crosslicense的인경우도勿論흔히있다.그러나特許權이없음에도不拘하고地域이 지나치게制限되는것은막아야하고이러한問題도難問題의하나가될것이다.

4. 技術檢討機關

後述한바와같이外資導入法施行令第9條(技術用役者의檢討)에는現金借款契約과資本財導入契約만을技術士法에따라技術士(技術士를雇傭하는技術用役者를包含)의技術檢討를받게되어있을뿐인데實際는技術導入契約의大部分은導入者가技術士(技術檢討機關)의檢討를그自體의重要性和會社의必要性으로서미리받고있으며商工部도告示第2671號(1966·7·23)로서指定한檢討機關의技術檢討를받게끔한바있었다.

一部實需要者는各種技術檢討에있어서實際로는技術士檢討外에도거쳐야할技術檢討機關이 많다는不平이 가끔 있다.法과大統領令에따라政府가認定한技術士가檢討한然後에 또다시商工部는商工部대로科技處는科技處대로經濟企劃院은또한그대로여러번同一種類的檢討가重複되니單一化할수는없는가하는不平인것같다.

그리고技術士의檢討가技術士만의責任下에서이루어지는것보다技術士가屬하는機關의不可避한壓力같은것의影響을받을要因이介在되어있지는않을까? 그의用役費自體가導入者自體負擔으로되어있으니導入者自身の口味와期待值에비추어差가있으면(그러한檢討結果에따라서는事業自體의認可를받을수없을지도모르는程度)구태어그의貴重한費用을捻出않을것이니……等等의여러가지原因으로檢討가粉飾될可能性도있을것이다.이러한批評도있었는데如何間是正되어야할點은是正이考慮되어야하고,單一化되어야할點은單一化가檢討되어야할것이나,同時에技術士의檢討가權威를認定받고또한技術士自身の倫理와技術士의地位向上이講究되어야할것이다.

一般的인技術檢討作業을할때所要施設,設備,機器,機材,技術等に있어서그의具體的인內容이相當히明示되어있는것을對象으로하고그의技術的妥當性を檢討하게되는데作業後工

場建設段階에 이르러서는 果然 그 契約과 그 計劃된대로 導入되어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勿論 計劃, 調査, 研究, 設計, 試驗 및 評價等으로 用役業務는 分類될수도 있고 또한 過程의 分類로서 設計 技術用役, 施工, 始運轉, 稼動 등으로 必要에 따라 業務를 契約할 수 있는 것이고, 技術用役者가 性格上 또는 契約條件에 따라 施工 또는 監督을 맡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技術檢討한 者가 導入前에 技術檢討할 때의 內容과 實際 施工 또는 竣工時의 그 內容이 相異되어 몹시 망망치 못한 점이 있다해도 技術檢討만 했으면 그만이지 그 後의 것은 實際 된 건 말건 그것은 導入者에 關한 責任所管事項이 吾不關으로 돌린다는 것을 After-service 的인 觀念으로 考察할 때 지나치게 迴避 的인 것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國家的인 見地로서는 竣工될때까지의 技術士의 確認制度같은 것도 必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될때가 가끔 있다.

以上으로 技術檢討에 關聯있는 若干의 問題點을 單片的으로 考察하여 보았지만 어쩐지 現段階에서는 公開가 되지 않는 또한 公開할수 없는

隘路點이 漏落되어 있는 反面 그다지 強調할 수 없는 點이 問題視된 感이 不少하다.

그러나 論及하고 싶은것은 韓國도 技術士가 있으니 技術士가 할 일도 많고, 또한 技術士를 活用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法律로서 定한 技術士法을 보면 이 法은 技術士에 對한 資格을 定하고 그 業務의 適正을 圖謀함으로써 科學技術의 向上과 國民經濟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의 定義에서 「技術士」라 함은 科學技術에 關한 高度의 專門的知識과 實務經驗에 立脚한 應用能力을 요하는 事項에 關하여 이 法에 依한 資格을 얻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現在 輩出된 技術士가 4회에 亘하여 13個部門(그중 2個部門은 現在까지 合格者 없음)에 걸쳐서 164名이 있다.

技術士는 技術士대르 前記 目的을 爲하여 如何히 할것인가를 恒常 銘心努力해야 할 것이고 國家는 國家대로 如何히 技術士를 活用하여 前記 目的을 遂行케 하는가를 考慮해서 科學技術의 向上과 國民經濟에 寄與케 하여야 할것이다.

※ 筆者: 現 商工部 特許局 審査室長

創——祝——刊

現代產業의 發展은 研究開發로 부터!



財團
法人

韓國科學技術研究所

住所: 서울 特別市 城北區 下月谷洞 山 5~47

電話 (93) 0763 · 4187 · 5454

臨時事務所: 서울 特別市 鍾路 2街 YMCA빌딩 4·5層

電話 (75) 1461-65

所長	崔	亨	燮
副所長	申	應	均